발전공기업 통합실무지원단장 채용 공고

☐ 해당 채용공고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채용입니다.
☐ 발전공기업 통합실무지원단장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1. 선발분야 및 인원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붙임1]

구 분	인원	직 무	근무지역
통합실무 지원단장 (기간제근로자)	1	•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종합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 • 조직, 인사, 노무, 재무, 사업, IT 등 분야별 통합과제 수행 • 통합대상 기관 간 갈등·이해관계 조정 • 기타 통합 관련 제반 실무업무 총괄	서울*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 회사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필요시 타 지역 변경 가능

2. 채용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채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처장급)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통합법인 설립등기일까지 ※ 최초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고, 통합법인 출범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이내에서 계약연장 가능 ※ 한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채용이 아님
급여수준	• 약 145,600천원/년 (세전, 12개월 균등 지급) 수준
채용 후 소속	• 발전 5개사 중 최종합격자가 재직한 경력이 있는 기관을 소속(채용) 기관으로 하며, 2개 이상의 발전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재직한 기관을 소속(채용)기관으로 함

3. 지원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연 령	• 제한없음
병 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경 력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에서 상임이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접수마감일까지 퇴직한 자 ※ 재직 경력 인정기간 : 2021.10.9. ~ 2026.10.8.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2 • 입사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4. 지원서 접수 : 2026. 9. 30.(수) ~ 10. 8.(목) 23:00

☐ http://koenergy.saramin.co.kr 을 통해 온라인 지원

☐ 접수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

5. 전형절차

□ 전형절차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1차전형 (서류전형)	• 지원자격 심사(적부판정) • 지원서 심사(100점) : 업무실적서(50점) + 직무수행계획서(50점) 붙임3 ※ 지원서 불성실기재 시 불합격 처리하고, 블라인드 위배 시 서류전형 총점에서 1점 감점 [불성실기재 및 블라인드 위배 기준 : 붙임4]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 (제출기한 :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의 다음 날)	
2차전형 (면접전형)	• 종합면접(100점) : 전문성, 산업이해도, 조직적합도, 리더십, 이해관계조정능력 등 종합평가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합격예정자 결정	• 면접전형 적격자 중 고득점 순 2명을 추천하고 통합준비위원장이 최종 1배수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최종합격	• 신체검사·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검증결과 반영	

※ 면접전형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별도 안내

※ 과락 기준 : 면접전형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 60점 미만 시 과락

□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처리기준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합격
면접전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종합면접 원점수 상위자 ③ 서류전형 총점 상위자 ④ 서류전형 중 직무수행계획서 점수 상위자

6. 가점 등 우대사항

대 상	대상자요건	적용내용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 각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증명서상 가점 적용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가점 미적용.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7. 제출서류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 rowspan="4">서류전형
합격자</td><td rowspan="2">(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
제출</td><td>공통</td><td>• [경력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①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경력기간 전체)</td></tr>
<tr><td>해당자</td><td>•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사본 1부</td></tr>
<tr><td rowspan="2">(2차)
면접일
대면 제출</td><td>공통</td><td>• [경력사항]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①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경력기간 전체)</td></tr>
<tr><td>해당자</td><td>•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 원본 1부</td></tr>
<tr><td colspan="3">합격예정자</td><td>• 신원진술서(작성양식 별도안내)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1부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td></tr>
</table>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는 사전에 발급할 것을 권장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징계이력이 명시되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및 징계이력란이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 수기 작성 후 날인한 증명서 제출(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자격 및 재직중인 회사(기관)의 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서류 제출 시 지원자의 사진, 성별, 주소, 학교명, 주민등록번호(생월일 제외) 등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단, 자격사항 진위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대상이 아님)

- 자격사항 진위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 이전직장명, 근무부서 등

※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을 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수취 및 확인한 후 진위확인 시행(기한 내 서류 미제출, 진위확인 결과 특이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입력사항 진위확인 및 면접합격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8. 세부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채용공고	9.23.(수) ~ 10. 8.(목)	
• 입사지원	9.30.(수) ~ 10. 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월 중순	
• 면접전형		장소 : 서울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예정자 발표	10월 말	
• 최종합격자 발표	10월 말 또는 11월 초	
• 입 사		입사 당일 배치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채용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

9.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블라인드 위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 붙임4]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주소, 생년 기재란 없으며, 전형별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생월일만 입력
(지원서의 성명, 생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한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 이메일 기재 시 **특정단체명(회사, 학교, 소속 등)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가족관계 등) 일체 기재 금지**
단, 직무와 관련한 사항(회사명, 근무부서, 학력, 자격증 등)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님

□ 서류 제출 시, **블라인드 대상 개인정보 마스킹 후 제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10. 불합격자 이의신청

□ 신청기간 : 전형별 합격발표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이의신청 양식 : 붙임5] 작성 후
이메일(nayahyeya@naver.com)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사항 등
2)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1.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대상자 : 발전공기업 통합 실무지원단장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 반환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붙임6] 작성 후
이메일(nayahyeya@naver.com) 접수

○ 신청기간 및 발송 :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12. 기타사항

□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기록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 시 불합격 처리 붙임2

□ 단계별 전형 결과, 회사에서 정한 기준(면접점수 과락 등)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배수·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지원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및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 채용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친인척, 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또는 기타 채용과정에 개입하여 채용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당사 규정에 따라 해임조치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및 위원회 해임 요구에 따라 해임 가능

□ 채용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해임될 수 있음

□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을 제한함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함

□ 면접전형 시 **지정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함**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시기회를 부여함

붙임7

□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

2026. 9. 23.(수)

[붙임 1]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발전공기업 통합실무지원단장

<table>
<tr><td>채용
분야</td><td colspan="5">발전공기업 통합실무지원단장</td></tr>
<tr><td rowspan="5">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01. 사업관리</td><td>02. 경영·회계·사무</td><td>19. 전기·전자</td><td>23. 환경·에너지·안전</td></tr>
<tr><td>중분류</td><td>01. 사업관리</td><td>전체</td><td>01. 전기</td><td>01. 산업환경
05. 에너지자원</td></tr>
<tr><td>소분류</td><td>01.프로젝트관리</td><td>전체</td><td>01. 발전설비설계
02. 발전설비운영</td><td>01-02. 대기관리
05-05. 재생에너지
05-07. 신에너지</td></tr>
<tr><td>세분류</td><td>02.프로젝트관리</td><td>전체</td><td>전체</td><td>전체</td></tr>
<tr><td>비고</td><td colspan="4">이외 전력산업 및 에너지분야 관련 전문 직무능력이 요구됨</td></tr>
<tr><td>핵심
책무</td><td colspan="5">○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실무지원단’ 운영 총괄</td></tr>
<tr><td>직무
수행
내용</td><td colspan="5">○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종합·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무 총괄
○ 발전 5개사의 통합 쟁점(조직, 인사, 노무, 재무, 사업관리, IT 등) 조율 및 변화관리 대안 마련
○ 정부, 국회,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운영 및 갈등 관리
○ 이외 발전공기업 통합에 필요한 실무 업무 전반 총괄</td></tr>
<tr><td>필요
지식</td><td colspan="5">○ 기업 통합, 조직설계 등에 관한 고도화된 전문 지식
○ 국내·외 전력시장 구조 및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
○ 공공기관 거버넌스,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상법 등 기업 통합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지식
○ 갈등관리, 협상론, 변화관리 방법론 등에 관한 전문 지식</td></tr>
<tr><td>필요
기술</td><td colspan="5">○ 대규모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및 상위 기구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능력
○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 및 갈등해결 능력
○ 정부 및 국회 등 대관 업무와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능력
○ 경영·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통합 방향을 객관적 제시하는 기획력
○ 통합 실무지원단을 원만히 이끌 수 있는 리더십</td></tr>
<tr><td>직무
수행
태도</td><td colspan="5">○ 공정성 : 국가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태도
○ 추진력 :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
○ 개방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
○ 사명감 :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태도</td></tr>
</table>

[붙임 2]

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3]

업무실적서

응시 직무(발전공기업 통합실무지원단장)와 관련하여, 귀하가 총괄 또는 주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및 조직 변화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실적과 본인의 역할을 기술해 주십시오.

※ 금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명,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 정보 노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붙임4 참조)

① **대규모 프로젝트 총괄 및 조직 통합(개편) 경험 [1,000자 이상 2,000자 이하]** : 합병 후 통합(PMI), 기업 통합(M&A), 대규모 조직 개편 또는 전사적 제도 개선 등의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무를 총괄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표적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당시 조직의 상황,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란
② **전력산업·에너지 분야 관련 근무경력 및 주요실적 [1,000자 이상 2,000자 이하]** : 전력산업 또는 에너지 분야에 근무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 대응, 전력시장 구조 개편, 대규모 발전 사업을 기획·운영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해당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본인만의 전문성과 이를 통해 창출해 낸 핵심 성과를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란

직무수행계획서

발전 5사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통합실무지원단장으로서의 역할 인식과 구체적인 실무 주도 방안을 아래 질문에 맞추어 기술해 주십시오.

※ 금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명,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 정보 노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붙임4 참조)

① **직무 이해도 및 통합 종합계획·핵심 쟁점 조율 방안 [1,000자 이상 2,000자 이하]** : 현재 전력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통합이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고,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단계별 과업 추진방안과 예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조직·인사(직급, 보수, 이동 등) 통합 및 재무구조 개편 등 실무적으로 가장 민감한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통합 모델(대안)을 설계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작성란
② **변화관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리더십 계획 [1,000자 이상 2,000자 이하]** :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발전 5개사 노동조합 및 발전소 소재 지역사회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채널 운영 전략을 기술해 주십시오. 아울러 물리적 결합을 넘어 성공적인 통합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내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사적 변화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란

[붙임 4]

불성실 기재 및 블라인드 위배 기준

1. 불성실 기재 기준

구분	유 형	세 부 기 준
1	작성분량 부족	· 문항별 기술분량이 최소작성분량의 90% 미만시 - 1,000자의 90%(900자) 미만 ※ 띄어쓰기(공백)를 많이 해서 글자 수를 넘긴 경우 공백 제외 후 글자 수 부족이면 부적격
2	무의미한 단어/문장 반복	· 의미없는 문자 반복입력시 [예시] ㅇㅇㅇㅇㅇㅇ, 가가가가가가가 등 ※ 의미 없는 문자 제외 시, 글자 수 부족이면 부적격
3	문항 간 또는 문항 내 동일내용	· 문항 간 또는 문항 내 동일내용을 작성한 경우 ※ 반복문장 제외 시, 글자 수 부족이면 부적격
4	타사, 타직무 지원	· 지원 회사, 지원 직무가 잘못 기술된 경우 ※ 단순 오기재·오탈자 등의 경우는 제외
5	질문무관 답변	· 애국가, 소설내용, 문항과 무관한 동문서답 등 작성한 경우 부적격
6	비속어 사용	·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 비속어 사용시 부적격

※ 6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적격

2. 블라인드 위배 기준

□ 기본사항

○ 입사지원서, 업무실적서, 직무수행계획서 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 기재 불가

구분	기준
작성불가 (블라인드 위배)	성명·성별·나이(생년)·종교·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 일체, 출신지역,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정당 가입이력 등
작성가능	이전직장명, 근무부서, 직무 관련 전공·교육사항, 학력[학교명 불가], 직무 관련 자격증·특허·논문(단 논문 내용 및 출처에 학교명·교수명 등이 포함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필요) 등

○ 블라인드 위배 시 횟수와 관계 없이 서류전형 총점에서 1점 감점 처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세부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구분	세부기준 및 위반사례	
성명	세부기준	입사지원서에 지정된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업무실적서, 직무수행계획서 본문에 본인의 성명을 노출하는 행위
	위반사례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작성요령	본인의 이름 대신 ‘지원자’라는 명칭 사용
성별	세부기준	본인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특정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기재하는 행위
	위반사례	“여성 임원으로서…”, “장남으로서 길러온 책임감…”
	작성요령	성별이나 가족 내 역할이 아닌 직무상 역할을 작성
나이(생년)	세부기준	출생연도, 학번, 현재 연령을 기재하는 등 연령을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위반사례	“70년대생으로서…”, “올해 60세의 나이로..”
	작성요령	나이나 연령대 대신 근무연차(경력기간)을 명시
종교	세부기준	특정 종교의 명칭, 종교적 신념, 종교 단체에서의 직책이나 활동내역을 기재하여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행위
	위반사례	“매주 교회에서 봉사하며…”
	작성요령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단체, 비영리 단체 등으로 익명화
신체조건	세부기준	키, 체중, 용모 등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지정된 양식 외에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
	위반사례	“185cm의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
	작성요령	신체조건 대신 직무역량을 근거로 강점을 작성

출신지역	세부기준	출생지, 현재 거주지 등을 기재하여 특정 지역 출신임을 암시하는 행위
	위반사례	“서울에서 태어나...”,“경상도 특유의 인내심으로...”
	작성요령	특정 지역 출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
출신학교명	세부기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구체적인 학교명이나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재단명, 동문회, 교수이름 등을 기재하는 행위
	위반사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 시절...”
	작성요령	학교명은 철저히 삭제하되 전공, 학위명 중심으로 작성
가족관계	세부기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의 직업, 직장명, 직위, 사회적 신분 등을 기재하는 행위
	위반사례	“산업부 고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작성요령	가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
정당 이력	세부기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이력, 정당 내 직책, 선거 캠프 활동,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
	위반사례	“과거 민주당 정책위원회 에너지특보로 활동하며..”
	작성요령	국회, 정책자문기구 등 중립적인 기관명을 사용하거나, OO당처럼 익명화

[붙임 5]

채용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신청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신청이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7]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7조 제1항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5, 기재부)

2. 내용

□ **(피해자)**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시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